

#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Meaning and Prospect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Private Security in Korea

-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2006' Examination -

정지운\*

〈목 차〉

I. 서론	IV. 문제제기 및 대책
II. 2006년 응시현황 및 분석	V. 결론
III. 합격자 현황 및 분석	

### 〈요 약〉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국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민간경비,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 민간자격, 경비지도사, 경비원

\*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 1. 민간자격증의 의의

#### 1)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박준석, 2006:10).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공배완, 2006:53).

#### 2) 자격의 종류

민간자격은 대상에 따라 민간자격과 사내자격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인 반면 사내자격은 사업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이다(박준석, 2006:10).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자격기본법(1997. 3. 27. 제정, 법률 531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법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기본사항, 국가책무, 민간자격의 공인, 자격의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안황권, 2006:160).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은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부문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산업계와 사회의 통용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안황권, 2006:177)<sup>1)</sup>.

### 2.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 1) 민간경비의 정립

우리나라에서 ‘공(公)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私)경비’ 또는 ‘민간

1)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pp.174-175. 참조.

경비'가 정립된 것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김정환/서진석, 2003:25)<sup>2)</sup>되면서부터 이다.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청원경찰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의 제도적 시초로서 볼 수도 있으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의 경비업과는 내용적인 차이가 있었다(공배완, 2006:54). 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1981·1983·1991·1995·1997·1999·2001·2002·2005 총 11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제5차, 제7차, 제8차, 제9차 개정은 중요한 개정이었다(안황권./안성조, 2006:185)<sup>3)</sup>.

민간경비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공경비인 군대와 경찰과 같은 불특정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나 집단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정한 재화를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와 피보호자는 재화를 매개로 하는 일정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상호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김정환/서진석, 2003:25).

195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연원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원조경제와 미군의 주둔이 원인이 된 군납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민간경비의 발전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8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3년 만에 정부가 수립되어, 한국은 자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후에도 그치지 않는 정치적 혼란과 6·25전쟁, 취약한 경제기반 등은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에서 자생적 민간경비의 출현을 기대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토양이었다(김정환/서진석, 2003:39).

1978년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면서 민간경비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의 기계경비시스템이 한국과의 합작형태로 도입되면서 방법적 기능의 민간경비업체의 활성화 계기가 되었고, 1993년 대전엑스포, 1994년 방범전시회, 1997년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시 그리고 1999년 대폭적인 경비업법의 개정 및 보완 등으로 민간경비업체의 양적 팽창과 경비요원에 대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공배완, 2006:54, 김태민/김동제, 2006:118). 1978년에는 한국경비협회에 소속된 경비회원업체수가 1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2004년에는 2,000여개 이상이 되었고(공배완, 2006:54), 2005년 말 기준으로 2,515개의 경비업체, 122,327명의 경비원이 활동하여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김태민/김동제, 2006:118).

민간 경호경비의 근본적 사회역할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2) 용역경비업법의 제정배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p.125-130. 참조.

3) 경비업법개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pp.185-186 참조.

고, 일정 시설물에 대한 방어 및 보호이다. 이것은 민간경비가 단순히 공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업무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고 독자적 직무역역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진환, 2006:73).

## 2)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는 국가(경찰청장)에 의하여 그 자격증이 발급된다(경비업법, 제11조 2항).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경비지도사는 결격사유(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제11조 1항),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면제자의 범위 등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각각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3항, 경비업법시행령 제10조-제17조). 이에 대한 시험과목 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방법기능에만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박동균, 2005:115)도 있다

법률에서 이와 같이 경비지도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경비업과 관련하여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경비업과 관련한 국가적인 일정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민간경호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지도사의 수는 3,226명이다(김태민/김동제, 2006:121).

## 3) 경비원

3,226명의 경비지도사에 비하여 약 38배에 해당하는 122,327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김태민/김동제, 2006:121)<sup>4)</sup>. 그런데 경비지도사에 비하여 경비원에 대한 자격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함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경비분야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민간경비업체의 다양성과 규모 및 수준의 차이에 따라 고객이나 일반대중이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안황권, 2006:178).

경호 및 경비<sup>5)</sup> 또는 보안관련 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직업 또는 직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경비산업의 발전을 위

4) 구체적인 경비원과 경찰의 변동추이에 대하여는 p.121 ‘<표2-1> 민간경호업체-경호원과 경찰관 현황’ 참조

5) 경호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실법(2005. 3. 10. 개정) 제2조에 의하면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고 하고 있으나, 개정 전에는 경호의 기본요소로 호위(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와 경비(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김태민/김동제, 2006:119).

해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제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공배완, 2006:53)는 주장은 선진화된 문화의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전문성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때, 경호 및 경비분야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첨단화하는 현대문명 속의 다양한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는 매우 어렵고, 전문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 II. 2006년 응시현황 및 분석

### I. 시험과목 및 배점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국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sup>6)</sup>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미국 등 선진국의 문헌에서 ‘Private Security’ 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경비업법을 통대로 ‘민간경비’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민간경비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기에 이르렀다(김태민/김동제, 2006:120).

#### 1)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구분되었다.

이론과목으로 경호학·경찰학·민간경비론·범죄학·경비업법·법학개론 등이었으며, 이 중 2과목을 응시자가 택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이론과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인정제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2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는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실기과목은 경호무도와 체포·호신술로 구분되었다.

#### 2) 배점

이론과목 중 2개 과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학점이 A 이상인 경우에는 90점, B 이상이 경우에는 80점, C 이상인 경우에는 70점, D 이상인 경우에는 60점으로 산정

6) 신변보호사 2급은 ① 4년제 대학교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② 3급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였으며, 신변보호사 3급은 전문대학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였다.

하기로 하였다. 실기과목은 경호무도 50점, 체포·호신술 5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합하여 총점은 만점 200점인데 이론과목이 최고 점수가 90점이므로 최고점수는 190점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 2. 일정

시험공고부터 합격증 발급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 시행공고 : 2006. 10. 2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대하여 공휴일과 토요일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근무시간)에 접수하도록 하였고, 원서 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 장소는 응시자가 재학 중인 대학 경호, 경찰 관련학과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대학 학과(부)별로 접수하여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2) 접수기간 : 2006. 11. 6. - 15.(수)

접수기간을 토요일 휴무일을 제외한 날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접수기간은 8일간이었다.

3) 시험실시 : 2006. 11. 25.(토)

시험은 2006년 11월 25일 실시되었는데 수도권 등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시험과 관련된 원서 및 채점표 등은 11월 23일 각 지역 본부장을 통하여 인계되었다.

4) 합격자 발표 : 2006. 12. 5.(화)

합격자에 대한 발표는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하여졌다.

5) 합격자 등록 : 12. 12.(화)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신의 합격을 증명하는 합격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합격증 발급 : 12. 20.

합격증 발급은 각 대학으로 우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원하는 경우나 소수의 학생이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 주소지로 우송되었다.

## 2. 응시대학 및 인원

응시대학은 경기대를 비롯하여 총 40개 대학이었으며, 응시인원은 총 822명이었다. 응시대학과 응시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대(15), 경동정보대(32), 경운대(75), 경원전문대(28), 경일대(6), 계명대(14), 관동대(6), 남도대(42), 대구과학대(51), 대구미래대(15), 대구산업정보대(16), 대구한의대(17), 대림대(33), 대불대(24), 대전대(2), 동강대(35), 동서울대(21), 동아인재대(6), 동우대(21), 동의과학대(17), 동의대(5), 서남대(12), 선린대(8), 순천향대(11), 신성대(15), 안동과학대(25), 여주대(30), 영남외국어대(11), 영남이공대(9), 영산대(1), 용인대(28), 우송정보대(1), 원광대(1), 인천전문대(3), 전남과학대(8), 중부대(60), 창신대(4), 포항1대(38), 혜천대(60), 호서대(16) - 가나다 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지원한 대학은 경운대로 75명(9%)이었다. 가장 적은 지원을 보인 대학은 영산대, 우송정보대, 원광대로서 각각 1명이었다.

## 3. 응시지구별 현황

1) 수도권은 용인대가 수험장소였으며, 9개교 185명이었다.

① 경기대(15), ② 경원전문대(28), ③ 관동대(6), ④ 대림대(33), ⑤ 동서울대(21), ⑥ 동우대(21), ⑦ 여주대(30), ⑧ 용인대(28), ⑨ 인천전문대(3)

수도권에 속한 대학은 대부분 비슷한 지원율을 보였다. 다만 관동대와 인천전문대가 저조하였으나 타지역에 비하여 그 차이가 작았다.

2) 대구는 대구과학대가 수험장소였으며, 13개교 246명이었다.

① 경동정보대(32), ② 경일대(6), ③ 계명대(14), ④ 대구과학대(51), ⑤ 대구미래대(15), ⑥ 대구산업정보대(16), ⑦ 대구한의대(17), ⑧ 선린대(8), ⑨ 안동과학대(25), ⑩ 영남외국어대(11), ⑪ 영남이공대(9), ⑫ 창신대(4), ⑬ 포항1대(38)

3) 경북은 경운대가 수험장소였으며, 1개교 75명이었다.

4) 부산은 동의과학대가 수험장소였으며, 3개교 23명이었다.

① 동의과학대(17), ② 동의대(5), ③ 영산대(1)

부산은 타지역에 비하면 가장 적은 지원자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각 대학별 학생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5) 대전은 혜천대가 수험장소였으며 7개교 165명이었다.

① 대전대(2), ② 순천향대(11), ③ 신성대(15), ④ 우송정보대(1), ⑤ 중부대(60), ⑥ 혜천대(60), ⑦ 호서대(16)

대전지역은 중부대와 혜천대의 지원자만으로도 120명이 되었다.

6) 광주는 동강대가 수험장소였으며 7개교 128명이었다

① 남도대(42), ② 대불대(24), ③ 동강대(35), ④ 동아인재대(6), ⑤ 서남대(12), ⑥ 원광대(1), ⑦ 전남과학대(8)

응시지구별 응시대학수와 응시인원을 보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응시지구별 응시대학수와 응시인원

	수도권		대구		경북		부산		대전		광주	
응시대학수	9	22.5%	13	32.5%	1	2.5%	3	7.5%	7	17.5%	7	17.5%
응시인원	185	22.5%	246	29.9%	75	9.1%	23	2.7%	165	20.0%	128	15.5%

위의 <표 II-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구지역은 가장 많은 응시대학수(13개대)와 응시인원(246명)이 집중되었음에 반하여 부산지역은 응시대학수(3개대)와 응시인원(23명)이 매우 저조하였다.

#### 4. 참여자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에 참여한 평가위원 및 진행요원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본부장(1인), 평가위원(3인), 간호사, 진행요원(3명)이었다. 따라서 6개 지역에 8명씩 총 48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 한국경비협회지부장(6명)의 업무협조와 한국경비협회에서의 총괄업무(고문, 사무총장, 사무국장, 직원 약간명) 및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의 이사장, 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참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소속대학, 직위 및 존칭은 생략).

- ① 용인대 : 본부장(이상철), 평가위원(김창호·박준석·박현수)
- ② 대구과학대 : 본부장(허원구), 평가위원(권정훈·박주현·송상욱)
- ③ 경운대 : 본부장(김동제), 평가위원(권창기, 채인길, 김태민)
- ④ 동의과학대 : 본부장(김경화), 평가위원(유정호, 최동제, 박영진)
- ⑤ 혜천대 : 본부장(서진석), 평가위원(이세환, 전만중, 이성진)
- ⑥ 동강대 : 본부장(일일도), 평가위원(김평수, 박희석, 이영오)



### Ⅲ. 합격자 현황 및 분석

#### 1. 대학별 합격자 현황 및 분석

응시자 822명 중 합격자는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었다.

763명에 대한 대학별 합격자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대(13), 경동정보대(30), 경운대(71), 경원전문대(28), 경일대(6), 계명대(14), 관동대(6), 남도대(41), 대구과학대(42), 대구미래대(15), 대구산업정보대(15), 대구한의대(17), 대림대(30), 대불대(23), 대전대(1), 동강대(34), 동서울대(15), 동아인재대(6), 동우대(15), 동의과학대(17), 동의대(5), 서남대(12), 선린대(7), 순천향대(7), 신성대(13), 안동과학대(23), 여주대(29), 영남외국어대(11), 영남이공대(7), 영산대(1), 용인대(24), 우송정보대(1), 원광대(1), 인천전문대(3), 전남과학대(8), 중부대(58), 창신대(4), 포항1대(37), 혜천대(58), 호서대(15) - 가나다 순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온 대학은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경운대(75명 중 71명 합격)였다. 100%의 합격률을 기록한 대학도 있었다.<sup>7)</sup> 지원자의 다소(多少)가 있었지만 그래도 100%의 합격률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 2. 응시지구별 현황 및 분석

1) 수도권(용인대)의 9개교 합격자는 163명이었다.

① 경기대(13), ② 경원전문대(28), ③ 관동대(6), ④ 대림대(30), ⑤ 동서울대(15), ⑥ 동우대(15), ⑦ 여주대(29), ⑧ 용인대(24), ⑨ 인천전문대(3)

2) 대구(대구과학대)의 13개교 합격자는 228명이었다.

① 경동정보대(30), ② 경일대(6), ③ 계명대(14), ④ 대구과학대(42), ⑤ 대구미래대(15), ⑥ 대구산업정보대(15), ⑦ 대구한의대(17), ⑧ 선린대(7), ⑨ 안동과학대(23), ⑩ 영남외국어대(11), ⑪ 영남이공대(7), ⑫ 창신대(4), ⑬ 포항1대(37)

7) 경원전문대(28), 경일대(6), 계명대(14), 관동대(6), 대구미래대(15), 대구한의대(17), 동아인재대(6), 동의과학대(17), 동의대(5), 서남대(12), 영남외국어대(11), 영산대(1), 우송정보대(1), 원광대(1), 인천전문대(3), 전남과학대(8), 창신대(4)

3) 경북(경운대)의 1개교 합격자는 71명이었다.

4) 부산(동의과학대)의 3개교 합격자는 23명이었다.

① 동의과학대(17), ② 동의대(5), ③ 영산대(1)

5) 대전(혜천대)의 7개교 합격자는 153명이었다.

① 대전대(1), ② 순천향대(7), ③ 신성대(13), ④ 우송정보대(1), ⑤ 중부대(58), ⑥ 혜천대(58), ⑦ 호서대(15)

6) 광주(동강대)의 7개교 합격자는 125명이었다.

① 남도대(41), ② 대불대(23), ③ 동강대(34), ④ 동아인재대(6), ⑤ 서남대(12), ⑥ 원광대(1), ⑦ 전남과학대(8)

응시지구별 응시대학수와 합격인원 및 합격률을 보면 다음의 <표Ⅲ-1>과 같다.

<표Ⅲ-1> 응시지구별 응시대학수와 합격인원 및 합격률

	수도권		대구		경북		부산		대전		광주	
응시대학수	9	22.5%	13	32.5%	1	2.5%	3	7.5%	7	17.5%	7	17.5%
합격인원 및 합격률	163	88.1%	228	92.6%	71	94.6%	23	100%	153	92.7%	125	97.6%

위의 <표Ⅲ-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지역은 가장 많은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합격률(88.1%)을 보였으며 부산지역은 응시대학수(3개교)와 응시인원(23명)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지만, 합격률은 100%를 기록하였다.

## IV. 문제제기 및 대책

### 1. 문제의 제기

#### 1) 민간경비의 질적·양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형태는 인력과 기계의 복합적 운용에 의한 종합경비형태를 띠고 있으며, 민간경비 업체의 규모도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나 질적·양적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초보적이고, 경비분야도 인력경비형태의 시설경비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공배완, 2006:54).

## 2) 경호 및 경비실무 종사자의 자질문제

경호 및 경비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공식적인 자격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이고,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설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공배완, 2006:53).

## 3)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와 파급효과

1980년대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 또는 경호라는 용어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민간기관의 업무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경비의 일반적 의미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었고, 경호의 의미는 대통령 경호실이나 경찰 또는 군의 공권력에 의한 안전작용을 말하는 것이었다(공배완, 2006:56). 1995년에 경비관련학과가 설치되었고, 2006년 현재 60여개 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학 이외의 대학부설기관이나 사설단체 등에서도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민간경비에 대한 교육기관의 양적 증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공배완, 2006:57).

### (1) 긍정적인 측면

- ①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적 정립의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
- ②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
- ③ 시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면서 사회의 전문직종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다는 점
- ④ 민간경비 관련산업의 부흥을 통한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점

### (2) 부정적인 측면

- ①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적 영역의 설정이나 풍부한 연구 실적과 성과 없이 양적 팽창만 이루어졌다는 점,
- ②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되는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달리 운영함으로써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점,
- ③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편중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 4)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 시행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 (1) 제1회 시험의 홍보상의 문제점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많은 논문에서 경비와 관련하여 자격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글의 생명력은 일시적인 전문적 논문으로서의 가치밖에는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간과한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즉 전문적 논문의 논의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화되고 제도화되어 시행됨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함이 시험시행에 있거나 그대로 노정되었다고 본다.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에 대한 적절한 홍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만을 공고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음의 많은 문제점 발생의 기초로서 작용하였다.

각 대학에서의 학과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각 대학의 교수와 어떤 협의나 협조요청도 없이 공고문과 원서만을 송부한 주체측(한국경비협회)에 대하여 상대방이었던 각 대학의 교수와 학과조교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으며, 역작용으로서 접수자체에 대한 반감마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고문상에 있는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으로의 교수, 학과조교,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음은 처음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보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 (2) 참여폭의 문제점

응시대상자의 폭에 대한 예측이 미비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응시자격에 대한 부분이 주로 현재 학부학생 내지 졸업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현직 교수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상당수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2006년 제1회 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우수한 합격률을 기록하고, 교수도 동시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음은 차후 시험시행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점이라고 할 것이다.

##### (3) 면제과목선정 및 범위의 문제점

면제과목으로 규정된 경호학, 경찰학, 민간경비론, 범죄학, 경비업법, 법학개론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과목만을 이수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매우 곤란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각 대학별 개설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4) 수험장소의 문제점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및 강원도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장거리의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몇몇 대학의 수험생들이 제기한 문제점이었다.

(5) 실기과목의 무도선정상의 문제점

실기과목에 있어서의 무도종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특공무술과 기초체력에 대한 추가선정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경호경비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 대책

1) 민간경비의 질적·양적 선진화모색

최근의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경비관련 영역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공경비의 대표적인 활동영역인 경찰영역에서도 민간경비의 역할은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인경호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예도 가끔 방송을 통하여 접할 수 있음을 볼 때 점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영역은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로서 질적·양적 선진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서 는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도입 또는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의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의 민간경비에 관한 소개<sup>8)</sup>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경호 및 경비실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모색

경호 및 경비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일반인의 구성원에 대한 불신감도 일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정한 직장, 그리고 위험부담의 발생 등이 자연스럽게 종사자의 자질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2006년에 제1회이지만 이제 경호 및 경비실무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검증 과정이 시행되었다. 물론 제1회였기 때문에 파생될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불

8) 2006년 12월 8일 국립경찰대학에서 열린 한국경호경비학회 창립 10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시큐리티산업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대응)는 일본, 중국, 독일의 현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형태로 제도화 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버리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업무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의 시작은 분명한 미래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논문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의견교환에서 민간경비자격증의 필요성과 시행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음을 짐작컨대 분명 민간경비 실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와 파급효과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상적으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양적 팽창을 축소시킬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시장구조에 의하여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팽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의 폐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을 비교한다면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으로서는 오히려 양적 팽창은 새로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되는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달리 운영함으로써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결국 교육과정의 현실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서적인 이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과과정이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상의 상이성에 대한 접근은 결국 공유할 수 있는 교육정보 내지는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편중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연구분야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간경비에 대한 장기간의 지속적 발전방향의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원과정과 전문적인 연구의 영역에 대한 개발은 민간경비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4)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 시행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 (1) 제1회 시험의 홍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 ① 홍보

2007년에 예정되어 있는 제2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이미 이루어진 홍보가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때 다양한 형태의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포스터를 통한 시각적 홍보 외에도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1회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홍보도 간접적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② 접수과정상의 협조구조의 형성

전국적인 시험의 시행과 전국적인 대학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사전에 수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격증 발급주체인 한국경비협회에서의 사전 협조공문과 전화 및 관련 행사에서의 홍보를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서송부 및 접수비 이체를 위한 작은 금액의 지출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2) 참여폭의 확대를 위한 대책

응시대상은 실제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간접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론과목의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및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차후에는 한국경비협회에서 현재 경비업체 근무자를 상대로 한 자격증취득과정을 개설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졸업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의 경우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다양한 접근구조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3) 면제과목선정 및 범위의 확정

면제과목으로 규정된 6개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선정은 시험 전에 각 대학의 교과목을 분석하여 동일군(群)에 속하는 과목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학과의 특성상 동일한 명칭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일군의 과목을 특정하여 덩으로써 시험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자격 등을 예측하거나 후에 대학 등에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 (4) 수험장소의 적정성확보

제2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의 수험장소는 가능한 한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거리와 행정구역 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행정구역 등에 따른 수험장소의 선정은 구태의연한 태도이므로 적절한 변화

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5) 실기과목의 무도선정의 사전 협의

실기과목에 있어서의 무도종목의 선정은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일면 모든 무도를 포함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특공무술과 기초체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깊은 고찰과 함께 그 선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시민의 안전을 과거에는 공권력에 의하여 전담되었던 반면 현재에는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 영역이 확대되어 사적 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요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공배완, 2006:55)고 볼 때 민간경비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험사회 속에서 궁극적으로 방법,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박동균, 2005:105).

민간경비의 성장과 발전은 사회발전과 비례하여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다원주의적 사회현상이 심화될수록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설적 명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의 사회적인 성장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범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민간경비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측면이다(공배완, 2006:56). 즉 민간경비가 시민안전에 대한 중심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공배완, 2006:55). 즉 삶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인간의 기초적인 요구로서의 안전요구는 민간기구에 의한 안보의존 형태로 나타나고, 경제적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은 민간기구에 의한 개인안보체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공배완, 2006:56).

민간경비 자격시험의 시행은 단순한 시험의 시행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민간경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험과 관련된 각 분야별 다양한 입장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크게 분야별 구분을 한다면 첫째 시험시행의 주체인 한국경비협회, 둘째 수험당사자인 학생, 셋째 수험자의 평가자인 교수 및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평가원)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제1회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주체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홍보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유형으로 포스터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비협회의 경비업상의 업무 중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5호)의 일부로서 당연한 업무영역이라 할 것이다.

한국경비협회의 역할의 수행은 경비협회와 전국의 각 대학 및 경비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한국경비협회의 역할 증대를 통한 기능의 활성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경비원 및 경비업체에게는 전문분야 및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정보 등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고(寶庫)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은 학업증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영역을 파악함으로써 자신들이 앞으로 담당하여야 할 민간경비업무에 대한 사전적 지식습득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로운 제도와 첨단기술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경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과정은 학생이 장래를 위해 접근하고 파악하여야 할 부분이다. 자격증의 취득 및 이를 활용할 기회를 찾고 이에 대한 연대과정도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많은 문제점은 교수 및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의 주도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학생과 한국경비협회의 중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비협회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교수의 적절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경비협회에서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는 간접 참여를 통하여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경비협회와 한국경호경비학회의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공통 관심사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도 집중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과 학생 그리고 한국경비협회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민간경비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의 구성은 실무를 겸비한 연구가의 입장과 동시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그 위상은 확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회 합격자에 대한 처우의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2회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처우의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비소지자와의 차별은 자격증취득을 위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의 발전은 민간경비를 선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자를 확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첨단기술과 첨단기계가 경비 업무를 대체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주장은 민간경비에 있어서 업무의 영역 및 분야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밀접하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영역을 매일 개척해나가고 있으며, 경비업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첨단기술의 하나인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은 일반인의 교통생활에 필수품인 GPS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때,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민간경비업 분야도 분명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새로운 수법은 과거 발생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시도되지만 일부분은 타 범죄유형을 모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예방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볼 때, 범죄학적인 접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합격자의 경우 최소한 학부과정에서 타 학생과는 구별되는 일부분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적절한 업무영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대우 또한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격자의 처우라는 변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 또한 일정규모 이상 성장해야 하며, 제도적인 연계를 통한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공배완(2006),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정환/서진석(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Ⅰ)」, 백산출판사, 2003.
- 김진환(2006), “T.H.I.에 의한 민간 경호경비원과 경호학과 대학생의 건강상태 조사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12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태민/김동제(2006), “한국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호경비연구」 제12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박동균(2005),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박준석(2006), “민간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경호·경비·보안 관련분야의 학문적 영역 발전방향」 2006년 제4회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체육학과 대학원 정기학술세미나.
- 안황권(2006),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11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안황권/안성조(2006), 「신경호경비법론」, 백산출판사.
- 이현희(2006), “한국 시큐리티환경변화와 국내 산업전망”, 「시큐리티 산업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대응」,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성용(2006), “독일 경비업의 현황과 제도”, 「시큐리티 산업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대응」, 한국경호경비학회.

##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 and Prospect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Private Security in Korea**

#### **-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2006' Examination -**

Jeong, Ji-Woon

This study is concerned Meaning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Prospect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private security in Korea.

Now, private security area is need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the first examination in 2006' in Korea has meaning that open the period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e 40 university(include colleges) applied the first examination. This exam is enforced 11. 25. 2006. in six part area in Korea. The 822 students are applied and 763 students(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92.8%) passed this exam.

This apply exam is meaning the start of new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in private security area. I hope that this exam is a opportunity of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lso, this exam is a opportunity of student in private security are more hard training before take a job.

As my understanding this exam is the confirmation by an authority, this exam is only neutral evidence to get the confidence and credit from the clients.

**Key Words:** private security, the first exam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 supervisor of security man, a security man